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18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185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3나129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가소1489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A

판결 선고 2015. 1. 29.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3나12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